

EMF 국제기술사제도와 WTO · NEW ROUND 조기 실시 대책

**Strategy for the EMF-International Register of Professional Engineers
and Early Launching the NEW ROUND**



글 / 沈淳輔
(Shim, Soon Bo)
수자원개발·토목시공기술사,
한국기술사회 국제협력위원장,
충북대학교 교수.
E-mail:wqshim@cbucc.chungbuk.ac.kr

EMF(Engineers Mobility Forum) 국제기술사 등록(International Register Professional of Engineers)을 위해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는 못했지만 한국기술사회의 심사 평가서(Assessment Statement)(초안)을 작성하여 EMF본부에 발송 하였으며,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될 EMF 조정위원회 회의 의장 및 비서와 EMF협정에 정식 회원국으로 서명한 회의 참가 11개국에 배포되어 검토 단계에 있다.

지난해 7월 일본 오키나와 G-8 정상회의 결과 협의된 바로는, 전문가적 개인 서비스를 포함한 완전 자유무역의 조기 강력실시를 천명하였다. 미국의 부시대통령도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WTO · New Round의 강력한 조기 실시를 재 강조하였고, 3월 7일 워싱턴에서의 한·미간 정상 회담에서도 미국측은 이를 재차 강조하였다. WTO, OECD, APEC의 각급 회의에서, 국제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제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미국 등 경제 대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상대국이 따라 줄 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APEC Engineer Project, Engineers Mobility Forum(EMF)에서의 국제기술사제도실시(안)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EMF국제기술사제도실시(안)에서는 소위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WA)를 앵글로 색슨계 8개국(Australia, Canada, Hong Kong, Ireland, New Zealand, South Africa, United Kingdom, United States)이 제정하여,

고등공학 교육의 인증 기준으로 하고, 이를 EMF 국제기술사가 되는 기본자격 기준으로, 즉 엔지니어링 학위(공학사)를 취득할 수 있는 승인되거나 공인된 공학 교육에 대한 실질적 동등성의 인정 과정 및 정책 기준으로 만들어 왔었다.

그래서, 미국의 공학교육인증원(ABET)이 공인하지 않는 고등공학 교육 프로그램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상호, 또는 다자간 면제 협정(Mutual Exemption Framework)에서 상대국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래서 나라간 협정을 Washington Accord 협정 조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자세를 취하곤 한다. 2001년 6월 남아공에서의 마지막 조정회의(International Register Coordinating Committee)를 끝내면 EMF 국제기술사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는 APEC Engineer제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6월 밴쿠버회의에서 한국기술사회를 한국 대표 기관으로 하여 정식 협정서명국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협정 서명 국으로서의 권리와 이점을 충분히 향유하려고 하면, EMF가 협정한 Global Standard에 알맞게 보완·수정해야 할 관련 법과 제도, 기준 및 관행들이 다수 있다. 이에는 관련 중앙 정부 부처, 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협회 등의 합일된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협정(안)을 확정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변화의 격변시대에는, 지금까지의 우리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술사회와 기술사들이 먼저 창조적으로 지혜롭게 변해야 누구나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WTO · New Round의 요구가 거세어도, EMF 국제기술사제도 실시가 우리에게 혹독한 새로운 능력을 요구해도, 우리 기술사들은 다같이 슬기롭게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